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04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양부남 • 권향엽 • 김한규

김현정 • 민형배 • 박균택

안도걸 • 이광희 • 이해식

전진숙 · 정진욱 · 채현일

의원(12인)

제안이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 선거여 론조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더라도 그 위반내역이 공개되지 않 아 조치 실효성 및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 (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8조의4 신설).

주요내용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08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4(위법선거여론조사기관명 등의 공개) ①관할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시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8조의4(위법선거여론조사기
	관명 등의 공개) ①관할 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
	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여론조사심의위원
	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당 선거
	여론조사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하는 정보를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
	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
	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u> 정한다.</u>